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757호

나. 발 의 자 : 허훈 의원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26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II. 제안이유

- 최근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, 관내 학교의 성폭력·성희롱 신고 건수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(11.3%)가 강제추행(55.9%)과 성희롱(16.8%)에 이어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.
- 이러한 불법 촬영 행위는 기존에 주로 화장실에서 발생한다고 인식되어 왔으나, 실제로는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사생활 보호가 절실한 취약 공간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현행 조례에 화장실 외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들을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- ‘화장실 등’의 정의를 ‘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불법 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’로 하여 본 조례의 대상을 확대함(안제2조제1호 신설).
- 조례상 ‘화장실’을 ‘화장실 등’으로 변경함(안 제1조 및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).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3. 입법예고 : 2025. 6. 3. ~ 6. 7.(의견: 없음)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허훈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757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불법 촬영 가능성이 잠재된 장소 범위를 화장실만이 아닌 다른 장소까지 확대함으로써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‘화장실’ 을 ‘화장실 등’ 으로 규정하고,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현행 조례는 학교 및 행정기관 내 화장실의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 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불안감과 2차 피해 발생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.
 - 그러나 동 조례 제정 이후, 적용 대상을 화장실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,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조례의 제명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」로 변경되었고, 일부 조항(제5조¹⁾) 또한 ‘화장실’ 을 ‘화장실 등’ 으로 개정하였습니다.²⁾
 -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(정의)에 ‘화장실 등’ 을 정의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

1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」 제5조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

2) 2023.10.5. 개정

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로 정의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, 여전히 조례 내 ‘화장실’ 로만 명시된 조항들을 ‘화장실 등’ 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현재 서울시교육청 역시 매년 ‘학교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 및 대응 계획’ 을 수립하고, 전문적 점검을 위해 위탁점검과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점검 대상을 화장실에만 국한하지 않고 ‘화장실, 탈의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가능성이 높은 장소’ 로 정하고 있습니다.³⁾
- 따라서 장소 불분하고 여전히 사회적 문제⁴⁾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고, 조례 제명과의 일관성과 조례 내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- 다만 제5조의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의 경우, 화장실 설치시와 설치된 화장실을 구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,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할 경우 본래의 취지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, 기존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제5조의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**화장실**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.
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**화장실**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3)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2025년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 및 대응 계획(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, 2025.1.)
4) 국토부 산하 공사 여성 **탈의실·화장실**서 ‘불법 카메라’ 발견돼(한겨레, 2023.2.24.)
지하철역 **여직원 휴게실**에 몰카 설치…30대 역무원 구속기소(중앙일보, 2024.7.31.)

○ 서울시교육청 또한 제5조의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는 화장실 설치에 대한 조항으로, 개정 조항에서 제외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6864, 2025. 6. 4.)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김명신(2180-8269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